



# 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「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」 제정·발령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결핵예방법 제11조(결핵검진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(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」를 제정·발령('19.12.9)하였으니, 각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종사자(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)에게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고시 제정 근거 : 결핵예방법 제11조(결핵검진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(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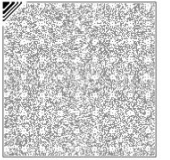
\*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: ① 결핵환자를 검진·치료하는 의료인 ②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③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매년 실시

나. 주요 내용

-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'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'를 포함

다. 시행일 : 2020년 1월 1일

붙임 : 「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」 1부. 끝.



## 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결핵협회장,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장

행정사무관

허창호

질병정책과장

전결 2019. 12. 13.

김기남

협조자

시행 질병정책과-6084

(2019. 12. 13.)

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(정부세종청사 10동)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501

팩스번호 044-202-3952

/ [changheo@korea.kr](mailto:changheo@korea.kr)

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